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보도자료		담당 부서	조사7과
				과 장 김경미
	배포일시	2025. 3. 26.(수) 08:00	연락처	02-3393-9950
	보도일시	2025. 3. 26.(수) 11:00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7과

□ 개 요

- 일 시 : 2025. 3. 26.(수) 10:00
- 장 소 :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 60명 내외
 - 위원회 : 위원장, 제2상임위원, 사무처장, 조사2국장, 조사7과장 등
 - 기자단 : 주요 외신기자 등 40명 내외
 - 신청인 : 20명 내외
- 주요내용 :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대외협력담당관)
10:05~10:15	10'	기자회견문 발표	박선영 위원장
10:15~10:30	15'	신청인 사례 발표	신청인 : Peter Møller, 한분영, 김유리
10:30~10:45	15'	조사 결과 발표	정영훈 조사2국장
10:45~11:00	15'	질의 응답	이상훈 상임위원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머리말 】

-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입니다.
-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고아들이 참전용사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 명, 두 명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정책적 문제점이 노정되어, 입양되어 나간 어린이는 물론이고, 생모 등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다층적인 권리 침해가 참 많았습니다.
- 또한 입양해 간 부모들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 입양아가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한 이후에도 입양 절차에 6년이나 소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참으로 좋으신 양부모들을 만나 잘 성장한 사례도 많습디만, 잘못된 입양 과정에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 오늘은 멀리 북유럽에서도 입양 당사자분들이 오셨습니다.
- 우리나라의 입양아들은 전 세계 15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 이 국가들은 주로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고마운 국가들입니다만, 그 나라들로 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양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 그 모든 아픔을 기억해 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을 예견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입양 당사자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산했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에,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좋은 기사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이 오늘은 특히 더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리가 비좁아 카메라 기자분들은 취재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추진 경과 】

- 돌이켜보면 입양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합니다.
- 그러나 입양과 관련된 법규는 동·서양 모두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인간의 자유나 각종 권리가 주장되고 규범화된 역사와 비교하면 너무 늦었습니다.
- 특히 동양의 경우,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 게다가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혈연 중심의 사고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입양이 아주 드뭅니다.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 게다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해외 입양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이라는 단어는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되어 입법의 미비와 졸속 행정을 야기했습니다.
- 심지어 우리가 잘살게 된 1990년대까지 해외입양은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된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 제가 기자 시절에 취재하며 분노했던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입니다.
- 해외 입양아 14만여 명 가운데,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등 11개국에서 모두 367분이 우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 그러나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그 가운데 60여 건만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

- 위원장인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지나간 아픔만 들춰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명 이상의 해외 입양아들과 이들을 입양해 간 입양국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입양아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 문제를 해결해 주며, 다양한 교육과 취업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신청인 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바쁘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취재에 나서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5개월 이상 노심초사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우리 조사관들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보도자료		담당 부서	조사7과
				과 장 김경미
	배 포 일 시	2025. 3. 26.(수) 08:00	연락처	02-3393-9950
	보 도 일 시	2025. 3. 26.(수) 11:00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 (02-3393-9700)
<3.15의거과>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055-246-8626)
언론·홍보팀장 양지훈 (02-3393-9726), 홍보전문위원 박영일 (02-3393-9730)

국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해외입양 아동 인권침해 진실규명

- 허위 고아호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 인권침해 확인
- 국가의 공식 사과 및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등 권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김○○ 등 56명)’에 대하여, 국가의 입법 미비, 관리·감독 부실,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채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은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호적(일가창립)’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신원이 변경되거나 기아로 서류가 조작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록원, 외교사료관, 서울기록원 등에서 해외입양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67명 신청인의 입양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입양알선기관 및 복지시설 직원, 신청인 친생 가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 한국의 해외입양은 >

한국전쟁 직후 단일민족 혈통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던 혼혈아를 대상으로 해외입양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1961년 신속한 해외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미혼모 자녀, 기아, 미아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해외입양 대상이 되었다. 국가는 입양대상아동의 인수, 양부모 검증, 입양수속, 출국, 외국에서의 법적 절차 완료 등 모든 입양 실무를 민간 입양알선기관에게 일임했다. 1955~1999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41,7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2년 7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가까이 요보호아동 대책에 있어서 국내 아동복지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으며,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하고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 특히 입양 관련 법*에서 해외입양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입양알선기관장이 후견권, 입양동의권 등 아동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양알선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를 방관했고, 국내 요보호아동을 대규모로 해외 송출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고아입양특례법(1961~1976년) 및 입양특례법(1977년~)

- 이러한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실, 왜곡 또는 허위 작성되었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입양인들은 우리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 구체적으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아래와 같다(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 입양 관련 법에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동의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 입양대상 아동이 무호적 상태인 경우 구청장이 작성하는 ‘고아호적’(Orphan Registration)은 아동이 일괄적으로 입양알선기관 소재지 앞에서 기아(棄兒, abandoned child)로 발견되었다는 허위의 기아발견조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형법 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 기재) 및 229조(위조등의 공문서의 행사) 위반에 해당함
-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사고로 인해 미아가 된 아동이 고아로 둔갑되어 해외입양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양 절차 중에 ‘부양의무자확인공고’를 진행해야 했으나, 미아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에 미아 발생 장소와는 무관한 지역 소재 법원 게시장 또는 구청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확인공고는 요식행위에 그쳤음
-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 입양알선기관은 입양 수속을 진행 중이던 아동이 출국을 앞두고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가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중단되었을 경우, 새로 인수한 아동을 기존에 수속 진행 중이던 아동의 신원으로 조작하여 빠르게 출국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 법에는 양부모 자격 검증을 보건사회부의 해외이주허가 심사 단계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 해(1984년 기준) 8천여 건에 달하는 해외입양 해외이주허가 심사의 절대 다수(99%)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처리되는 등 입양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이뤄졌음

- 후견인 직무 미이행 : 한국 입양알선기관은 수령국에서 입양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수행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나, 실제로는 아동이 출국하기도 전에 수령국 입양알선기관에 임의로 '후견권 이양각서'를 작성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음
-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 한국 입양알선기관들은 양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매달 수십 명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송출해달라는 수령국 입양알선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간소한 입양 절차를 통해 아동을 대량 송출하였음
-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 정부는 입양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고 입양알선기관 간 자율 합의에 맡기는 한편, 양부모로부터 입양실비 외에도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이를 입양 대상 아동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해외입양이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으로 자리잡게 만들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처럼 수십 년간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이 유지되어왔던 것은 국가가 입양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조속한 비준 △입양알선기관의 입양인 권리 회복 노력 등을 권고했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효한 다자간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네팔, 러시아와 함께 이 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이지만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에 해당한다.

□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 3. 27.(목) 오전 9시 30분부터 진실화해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노르웨이 해외입양조사위원회(Norwegian Investigation Committee on Intercountry Adoption) Ms. Camilla Bernt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그간 진실화해위원회의 해외입양 사건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상세자료 1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상세 자료

< 신청인 박○○의 사례 >

친권포기 및 입양승락서

출생지 서울

아동명 박○○ 성별 남 인종 한

생년월일 1980. 1. 9

KFO-52

Name Park Jung-soo

B.D 1-1-80

Color K Sex M

By Unmarried Mother

Date 1-10-80

PL Foster Home

본인 박○○은 상기 아동의 친모 되는 사람으로서 이 아동은 본인이 양육하는 아동임을 확인하였으며 입양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홀트아동복지회에 친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선언하고 이 아동의 장래를 위하여 귀회의 알선으로 입양하는 것을 승락합니다.

1980년 1월 10일

서약자 주소 경기도 김포군 ○○○

성명 박○○ 성별 여 연령 14

직업 주 아동과의 관계 친모

주민등록번호

- ☞ 친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 후, 다음날 입양승락서를 작성하여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 의뢰
- ☞ 이때 홀트아동복지회는 의뢰자의 신원이나 친자관계를 증빙할 서류도 받지 않고, 단 한 번의 면담 후 아동을 인수 (동의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위배)

< 신청인 김○○의 사례 >

入養兒童調書

依頼機關名 K S S C 記録者 姓名 김○○ 記録年月日 1980. 12. 1.

兒童姓名 김○○ 男(女) 生年月日 1980年 12月 30日 當年滿 歲 個月

現住所	인천 道 市 邑 區
出生地	“ 道 市 “ 市 郡 區 “ 洞 面 “
親父母의 血統	(✓) 韓國人 () 韓, 白人 () 韓, 黑人 () 其他
現在保育者	姓名 김○○ 兒童과의 關係 母子 保育始作 年月日 1980年 11月 30日
入養承諾者	姓名 “ 兒童과의 關係 “ 承 年 月 日 1980年 12月 / 日

후견인 (어린이집 원장) 앞까지 가려면 아동의 모든 후견인 친구의 딸이다 아동의 부모는 동거를 하면서 생활에 전념하지 못해 아동의 부친 사후의로 2학 계약으로 노동의 직업을 갖고 여느와 (4월 13일 현재) 현재까지 인식이 없어 변심한 것으로 생각함

- ☞ 아동의 외할머니 지인이라는 어린이집 원장이 후견인을 자청하여 출산 다음날 한국사회봉사회에 입양 의뢰한 사례
- ☞ 아동과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후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 ☞ 후견인의 신원 증명 서류는 물론이고, 친모의 입양 동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음

▶ 미리 인쇄되어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진 ‘기아발견신고’

< 기아발견조서 양식 >

발견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번지의 3호		
발견시	서기1974. 10. 27.	시	불상
부속품	없음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번지의 3호 김영희 보호양육함		

서기 1974. 10.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번지의 3호
한국사회봉사회 김영희의 기아발견 신고가 유하였으므로 동일
기아조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이름과 본적을 정함

- 입양대상 아동이 무호적 상태라면 구청장이 기아발견조서에 근거하여 ‘고아호적(Orphan Registration)’을 창설하는 절차를 거침
- 그런데 기아발견조서에서 발견지점을 제외한 발견 장소, 부속품, 신고자 등의 정보가 이미 서식에 인쇄되어 매번 동일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

<신청인 손○○의 요보호자수용의뢰서, 기아발견신고>

580 要保護者收容依頼書 No. 234

1. 要保護者

本籍	불상
住所	"
姓名	성명
性別	남
生年月日	서기 1974. 10. 27
備考	중부서

2. 施設入所理由

여성회관이 보호를 의뢰함

- ‘요보호자수용의뢰서’(78.9.25. 작성)는 해당 입양인이 부산 중부경찰서에 의해 발견되어 부산 여성회관에서 보호되고 있다가 남광아동일시보호소로 의뢰된 것으로 기재
- 그러나 ‘기아발견신고’(78.11.27.)는 최초 발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입양알선기관인 한국사회봉사회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작성되었음

기 아 발 견 신 고

By virtue of my right as legal guardian of

860, 31, 1974. 10. 27. 기아()성 별 ()

having sole custody of the said child, I hereby irrevocably consent to his/her emigration to the

추 정 서기 1974. 10. 27. 시 불상

adoption by suitable adoptive parents. I hereby authorize the

서기 1974. 10. 27. 시 불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번지의 3호에서 발견하여 한국사회

봉사회에서 양육하고 있음에 자인 신고합니다

서기 1974. 10. 27.

▶ 허위로 작성된 영문 입양 기록

- 1 -

入 養 兒 童 調 書

仰 決 裁	會 長	部 長	次 長	担 任	(林)
-------------	--------	--------	--------	--------	-----

依頼機關名 _____ 記録者 姓名 林 _____ 記録 年月日 1975.12.1 .

兒 童 姓 名 張 (男(女)) 生年月日 1974年 4月 18日 當年滿 1 歲 7 個月

現 住 所	道 市 郡 區	洞.面 洞	K S S
出 生 地	서울 道 西 郊 市 郡 區	응암 洞	242-110 号
親 父 母 의 血 統	(✓) 韓國人 () 韓.白人 () 韓.黑人 () 其他		
現 在 保 育 者	姓名 K S S	兒童과의關係 楊 某	呆育始作 年月日 1975年 11月 1日
入 養 承 諾 者	姓名 張	兒童과의關係 母	承 年 月 日 諾 1975年 12月 7日
後見人指定年月日	19 年 月 日 () 手續畢 () 手續을 畢할 豫定		
依 賴 機 關			

I 家 族 事 項

親 母

姓 名	張	生 年 月 日	1952年 11月 11日 當年 23 歲
職 業	過去 無	現 在	無
兒童親父와의關係	() 正式結婚 () 契約結婚 () 約婚 (✓) 其他 1974年 2月 20日 () 생이별 () 死別		

▲ 신청인 장○○의 입양알선기관 최초 의뢰 당시 작성 기록. 입양을 의뢰한 친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지(서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ADOPTION CENTER
ECKERSBERGSGADE 17 * 8000 ÅRHUS C

Information for ADOPTION in Denmark of a foreign child.
(Information concerning the child and his/her mother)

The below particulars should, if possible, be supplied by the foreign institution relating the child for possible adoption in Denmark.

A. Data relating to the child.

1. Full name	CHANG (Female) Case No. K-
--------------------	----------------------------

10. Any other information?..

The baby was referred and released on December 1, 1975 for overseas adoptive placement by Mr. Tae Duk PARK, Superintendent of Nam Kwang Children's Home located in Pusan City. Director of Korea Social Service, Inc. is to be appointed as the legal guardian of this baby around January 14, 1976. The referral records of the above-said Home indicated that the baby was placed to the Home on November 1, 1975 as an abandoned baby through Pusan City Office and her name and birthdate were known by a paper-slip, found in her clothings at that time of placement to the Home. Information about the baby's parents is not available from the record.

ju 00.0-103a

▲ 신청인 장○○의 양부모에게 전달된 영문 입양 기록. 한글 기록과 다르게 부산에 위치한 남광아동복지원을 통해 입양 의뢰되었고, 친부모 정보도 알 수 없다고 허위로 작성되었다.

<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란? >

입양 전 아동의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절차로서, 고아입양특례법(1961 ~ 1976년) 하에서는 지방법원이 입양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입양특례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1977년 ~) 하에서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수용아동의 후견인으로 결정된 때에 시설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의뢰하여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하였음

▶ 아동 최초 발견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이뤄지는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사례 : 형제복지위 해외입양 아동 21명의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장소>

최초 입소 시설	이송된 보호 시설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실시 장소 (구청)	아동수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부산 남광아동복지원	부산시 동래구	1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부산 덕성보육원	부산시 해운대구	2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강남구 / 강동구	15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1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동방아동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2

▶ 아동 발견 당시 구체적 정보가 모두 누락된 공고

[illegible]

▲ 아동 발견 당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된
<기·미아 및 가출아 보호 의뢰서>

(별지 제5호 서식)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코	아	①성 명 김 [redacted]	②성 별 남	③연 령 32년	(주거·가족)
		④본 적			
		⑤주 소			
		⑥주 경			
부양의무자 기타보호자		⑦성 명	⑧코아와의 연 락		
		⑨시·읍·면	대	서	구
		⑩보 호 시 일	1983	년	6 월
		⑪보 호 개 시 일	1983	년	6 월
		⑫주 소	대	서	구
		⑬주 경	상	동	

참고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코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
 이 공고하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3 년 6 월 70 일

국정장
 관
 공
 민
 주

▲ 아동의 발견 장소, 일시 등 주요 정보가 모두 누락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1984년 모 입양알선기관장의 직원 교육 자료 中

“우리나라처럼 많은 어린이가 유기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정부나 입양기관이 부모를 찾아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매우 막연하다. 대중매체도 기업이기에 부모를 찾는 기사를 무료로 매일 같이 신문에 공고해 줄 리 없을 것이며, (… 중략 …)

(아동의 친가족을 찾기 위한 6개월 의무 대기기간을 언급하며) 천명, 만명에 하나나 있을까, 10년에 하나가 있을지 모르는 사건을 막기 위하여 막대한 수의 어린이를 불편한 환경에 묶어 둔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은 외국 양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1984년 모 입양알선기관장의 직원 교육 자료 中

동아일보, “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 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 1979. 5. 16.

- 1978. 2. 포항시 거주 정○○ 씨의 딸 △△양(9세)이 동네 고물상 종업원 서○○을 따라 나섰다가 실종
- 서○○의 친구로부터 그가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들과 함께 그를 면회, 그가 아이를 부산 남포동에 유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후 파출소와 아동보호소를 거친 후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1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음을 확인
- 정 씨의 항의를 받은 입양알선기관 직원은 **“내 돈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동아일보, “미교포 할머니 모국방문 때 잃어버린 손자 찾고보니 미국가정에 입양”, 1986. 9. 24.

- 3년 전 미국에서 일시귀국할 때 데려간 손자를 국내에서 잃고 3년 동안 찾아해매던 김○○ 할머니(61)의 손자 서○○군(6)이 실종 후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사실 확인했으나, 양부모들이 서 군을 돌려줄 것을 거부
- 실종 당시 신문 보도를 접한 한 작가가 이 사연을 단편소설로 썼고, 우연히 이 소설을 읽은 대한사회복지회의 한 보모가 소설 속에 소개된 김 할머니에게 연락하여 서 군의 입양 사실을 알려준 것
- 복지회 측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 양부모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서 군의 할머니 측에게 **“입양규정상 서군의 직접대면이나 양부모 주소를 밝힐 수 없으며 물질적 보상을 해줄테니 서군을 포기하라”**고 말함

< 아동 신원 바뀌치기란? >

입양 수속을 진행 중이던 아동이 출국을 앞두고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가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중단되었을 경우, 입양알선기관이 새로 인수한 아동을 기존에 수속 진행 중이던 아동의 신원으로 조작하여 빠르게 출국시킨 것을 말한다. 입양알선기관은 입양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을 피하고 신규 아동 인수에 따른 행정 처리 등을 생략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을 타인의 명의로 만들어진 서류로 출국시킨 것으로서 입양 아동의 출신과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적 행위**였다.

▶ 신청인 권○○의 사례

변동된 아동 신원 : 엄○○ (1976. 1. 25.生)	신청인 신원 : 권○○ (1976. 1. 25.生)
1976. 12. 15. 서울의 노상에서 기아로 발견	1977. 3. 14. 신청인은 미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백부가 대신 양육하다가 입양알선기관에 입양 의뢰
1976. 12. 20. 부산 남광아동보호소에서 의뢰되었 다는 허위 서류를 덴마크 기관에 발송	1977. 3. 15. 이미 입양 수속이 완료 단계에 있던 엄○○의 신원으로 바뀌치기되어, 입양 의뢰 하루 만에 덴마크로 출국
1976. 12. 30. 고아호적 창설	
1977. 2. 16. 해외이주허가 취득	
1977. 날짜미상 엄○○ 사망 (추정)	

入 養 兒 童 調 書				
仰 會 長 部 長 次 長 担 任 裁				
依 賴 機 關 名 姓 名	2-5490	2/15	2/15	2/15
兒 童 姓 名	嚴 某 某 (男·女)	生 年 月 日	19 76 年 1 月 25 日	當 年 滿 1 歲 2 個 月

신청인 권○○의 입양아동조서. 엄○○이라는 다른 아동(영문으로 표기)을 대신하여 3월 15일 출국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입양알선기관(한국사회봉사회)은 이처럼 아동이 바뀌치기되었다는 사실을 양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2009년 양부모와 신청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 신청인 장○○의 사례

변동된 아동 신원 : 박○○ (1973. 4. 15.生)	신청인 신원 : 장○○ (1973. 3. 15.生)
1973. 5. 8. 인천 동구의 노상에서 기아로 발견되어 해성영아일시보호소 입소, 한국사회봉사회 통해 덴마크 입양 추진 1973. 6. 8. 주한미군 A씨가 해성영아일시보호소에 직접 박○○에 대한 입양 의사 전달 1973. 6. 26. A씨에게 개인적으로 입양되어 영아일시보호소 퇴소,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한 입양은 취소됨	1973. 10. 20. 친생부가 한국사회봉사회에 장○○의 입양을 의뢰 1973. 10. 28. 이미 입양수속이 진행되고 있던 박○○의 신원으로 바뀌치기되어, 입양의뢰 일주일만에 덴마크로 출국

- 1 -

入養兒童調書

仰
決
裁

會 長	副 會 長	部 長	擔 任

依頼機關名

記錄者 姓名

記錄 年月日 1973. 10. 21.

兒 童 姓 名 장○○

(男/女)

生年月日 1973年 3月15日

當年滿 歲 7個月

AC片

代

決

신청인 장○○의 입양아동조서. 박○○이라는 다른 아동을 대신한 case라고 기재되어 있다.

< 입양 관련 법에 명시된 입양부모가 될 자격 >

고아입양특례법 (시행 1961. 9. 30.)	입양특례법 (시행 1977. 1. 31.)
1.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을 것 4.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있는 직업을 위하여 매매 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에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이 있을 것	1.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천업·고역·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해외이주허가 심사

- ☞ 보건사회부가 진행하는 해외이주허가 심사는 정부가 입양부모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임
- ☞ 1970년대 말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과 및 해외이주국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행정사무관) 진술 : “현실적으로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해외입양아동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
- ☞ 1984년 보건사회부에 접수된 해외입양에 의한 해외이주 신청 총 7,964건 중 6,599건(82.9%)은 신청 당일에, 1,279건(16.1%) 신청 다음날 허가 처리되었음

▶ 자격 없는 입양부모에게 인수된 사례 (노르웨이 입양인 김○○)

노르웨이 행정당국이 김○○의 입양부모에게 보낸 통지문	
노르웨이어 원문	영/한 번역
RF ark 656/84-35 IK/IH 16. mars 1984 SØKNAD OM ADOPSJON [redacted] FRA KOREA - [redacted], 4360 VARHAUG Ovennevnte ektepar har ved søknad av 30.01.84 vedlagt foreskrevne attester og erklæringer. Hå barnevernsnemnd har i møte 07.03.84 vedtatt å godkjenne ekteparet som fosterforeldre med tanke på adopsjon av deres fosterdatter Kim [redacted] ved det norske navnet [redacted]. Søkerene har tidligere søkt om godkjenning som adoptivforeldre til utenlandske barn. Søknaden ble avslått i vedtak av justisdepartementet 18.04.77. Søkerene reiste imidlertid til Korea og kom den 23.03.78 tilbake med Kim [redacted], som siden har bodd hos dem. Kim Jung Ah er døpt i Norge og heter nå In [redacted]-To [redacted] Ha [redacted]. Hun har ingen tilknytning til Korea lenger. For å sikre henne best mulig mener fylkesmannen at hennes fosterforeldre nå må få adoptere henne selv om hun ble ulovlig brakt inn i landet for 6 år siden. Familien Ueland har sparsomme opplysninger om deres fosterdatter fra Korea, men det går fram av et dokument derfra at In [redacted]-To [redacted] kom fra et barnehjem og selv var innstilt på adopsjon. Fylkesmannen vil be om justisdepartementets vurdering av om vilkårene for adopsjon er tilstede siden denne saken er noe spesiell, og blant annet samtykke fra barnets verge i Korea ikke foreligger. Vedlagt oversendes sakens dokumenter.	(...) The applicants have previously applied for approval as adoptive parents of foreign children. The application was rejected in a decis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1977. 4. 18. However the applicants traveled to Korea and on 1978. 3. 23. returned with Kim **** ** who has since been staying with them. 신청자들은 이전에 외국 아동의 입양부모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은 1977. 4. 18. 법무부의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청자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갔고 1978. 3. 23. 김○○와 함께 돌아왔고, 그 이후로 김○○는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Kim **** ** was baptized in Norway and is now called In***-To** Ha****. She has no connection to Korea anymore. In order to secure her as best as possible, the county governor believes that her foster parents must now be allowed to adopt her, even though she was illegally brought into the country 6 years ago. 김○○는 노르웨이에서 세례를 받아 In***-To** Ha****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은 그녀가 6년 전에 불법으로 한국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그녀를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자료 해설] ☞ 입양 신청 당시(1977년) 50대 중반 나이였던 노르웨이의 A씨 부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반려되었음 ☞ 그러나 A씨 부부는 한국의 한 보육원에 방문하여 이미 중학생이던 김○○을 불법적으로 노르웨이로 데려와 양육했고, 6년 뒤 행정당국에 사후적인 입양 신청을 하였음 ☞ 노르웨이 당국은 이 과정이 불법임을 인지하였으나 김○○이 이미 6년간 노르웨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입양 승인 결정을 하였음	

▶ '양부모 대기자 적체 해소'가 목적인 입양 아동 공급

한국사회봉사회 & 덴마크 Adoption Center 간 논의 기록 (1971 ~ 1972)	
Adoption Center → 한국사회봉사회 서신 (1971. 9. 17.) During Bisgaard's and my visit we agreed that 15 children should be referred each month till the end of 1971. The number of referrals should then be re-considered on the basis of our waiting-list. Already at present, we can see that there will be more families ready for adoption than expected, and therefore, we will ask you to inform us if it will be possible for you to refer the same number of children in the beginning of 1972, as, otherwise, we must agree on an increased number of children from other areas.	1971년 말까지 매달 15명 아동 송출 합의한 바 있음. 이 숫자는 양부모 대기자 수에 기초하여 재조정 예정. 현재 이미 예상치보다 많은 대기자가 있으므로 1972년 초에도 현 수준 유지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함.
한국사회봉사회 → Adoption Center 서신 (1971. 9. 23.) In regard to your proposal for our referral of average 15 children per month in 1972, we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we will be able to refer such required number of children to your agency in 1972, and that these children will be coming from the Nam Kwang Receiving Home, located in Pusan City, beginning from coming October. With the Nam Kwang Foundation we have recently established the new cooperating sister working relationship, and we expect that more than 20 children will be referred to us by this Nam Kwang Foundation in future monthly and regularly, of which let us write you more in detail or let me tell you when I will be in Århus, probably in the early part of November.	1972년 초에도 매달 15명씩 보내주겠음. 이 아이들은 앞으로 남광아동복지원을 통해서 공급될 것이고, 향후 매달 정기적으로 20명 이상의 아동을 보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백○○(한국사회봉사회 회장)과의 면담 (1972. 5. 14.) REFERAT AF MØDE MED MR. PAIK, den 14.5.1972 Tove Prager gav Mr. Paik en redegørelse for situationen i øjeblikket, se vedlagte statistik. Mr. Paik ville gerne have at vide, om det var sandsynligt, at AC i fremtiden ville kunne placere mere end 15 børn om måneden og i så fald, hvor mange man ville kunne placere. AC foreslog forsøgsvis ca. 18 børn pr. måned, d.v.s. en stigning på 20%. Efter nærmere overvejelse satte AC sig fast på 20 børn pr. måned. Mr. Paik blev klar over, at det ville være nødvendigt med et "reservelager" på ca. 30 børn. Han lovede, at han ville gøre sit bedste for at foretage det antal børn, der stilles i forslag hver måned, med ca. 20%.	백○○은 향후 Adoption Center가 매달 15명 이상 아동 배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Adoption Center는 잠정적으로 매달 18명, 20% 증가를 제안함. 논의 끝에 매달 20명의 아동을 배치하기로 결정. 백○○은 이를 위해 약 30명의 '예비아동'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했고, 20% 증가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Adoption Center 대표 FLN & 한국사회봉사회 회장 백○○ 회의 (1972. 10. 8.) <u>8. Future Plans</u> FLN: I do not have much to add to the proposed plan for 1973, but would you be able to place a larger number of children to AC? With our present development we should easily be able to place 20 children a month. P: KSS can guarantee no less placements this year than last and we could refer 25 or more children a month if AC can raise the age limit, even if only up to 3 years of age. FLN: If we limit the age to under 2 years, how many could you refer then? P: AC is the only agency with which KSS co-operates, wanting only children under 2 years of age, and you must therefore make efforts to extend the age limit.	FLN : 1973년 예정 송출 아동 수를 좀 더 늘려 줄 수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는 한 달 20명의 아동 입양 배치가 가능하다. 백○○ : Adoption Center가 아동 연령 제한을 3세까지로 올려준다면 25명 이상 송출도 가능하다. FLN : 연령 제한을 2세 이하로 둔다면, 얼마나 송출이 가능한가? 백○○ : Adoption Center는 2세 이하 아동만을 요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러니 Adoption Center도 연령제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 ‘짐짝’처럼 떠나보낸 아이들 ... 수십명 이상 집단 호송

덴마크 Adoption Center 연례보고서(1984. 12.)에 실린 사진
(*사진 속 문구 : “한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료 해설]

- ☞ 양부모의 수요에 맞춘 입양 아동 공급에 매몰된 나머지, 수십명의 아동이 적절한 돌봄 장치 없이 항공기 좌석 벨트에 묶인 채 장시간 비행을 견뎌야 했음
- ☞ 마구잡이식 출국 과정으로 인해 1974년 10월,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동이 우유를 먹고 덴마크에 도착한 직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덴마크 법무부가 조사에 나선 사례도 확인됨 (*덴마크 항소위원회 2023년 조사 결과)

< 1980년 네덜란드로 입양 아동을 보낸 국가별 입양 절차 비교 >

송출국	입양 절차 소요 기간	양부모의 직접 방문 필요 여부	기타	1980년 입양실적
인도	수 개월~1년 (친권포기 결정 반복 사례 많음)	불필요	형제·자매 동시 입양 불가	133명
인도네시아	3~7개월 (입양신청문서 접수~아동 배정까지. 실제 아동 인수까지는 추가 기간 소요)	· 양부모 모두 방문 필수 (1명 방문은 예외적으로만 허용) · 체류기간 약 3주	-	-
콜롬비아	· 아동 배정까지 2~8개월 · 아동의 네덜란드 도착까지 2개월~1년 반	양부모 중 1명 이상 방문 필수	-	120명
에콰도르	일반적으로 긴 기간 소요 (예외적으로 5개월 미만 소요되기도 함)	불필요	-	6명
대한민국	양부모 동의로부터 아동 인수까지 6주~2달 반	불필요	형제·자매 동시 입양 가능	180명

※ 출처 : 네덜란드 입양알선기관 Wereldkinderen(세계의 아이들) 자료

▶ 숨겨진 입양 수수료, 기부금

- ☞ 1977년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정으로 입양 수수료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나, 보건사회부가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은 마련하지 않았음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 “입양알선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친될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8조)

- ☞ 법령의 불비로 인해 입양 수수료 상한선은 입양알선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보건사회부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을 따랐음

* 1982년 기준 아동 1인당 수수료 1,450달러 (당시 한화로 약 106만원)

- ☞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입양알선기관들이 정부에 보고한 입양 수수료 외에도 양부모 및 외국 입양알선기관에게 ‘기부금’ 명목의 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입양 실비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벌어들였음

기부금 강제 청구 사례

대한사회복지회, “입양 수수료 관련 협력기관과의 소통 서신”, 1982. 10. 20.

Adoption fee is US\$ 1,450 as of 1982 and there are additional US\$200 of contribution for domestic programs. The above two items are on the budget which SWS submitted to our Government at the beginning of 1982.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money is almost identical with those of other adoption agencies in Korea. If the contribution of \$200 is not permitted by the country's law, we receive \$1,650 as adoption fee.

1982년 수수료는 1,450달러이며, 추가적으로 국내사업을 위한 기부금 200달러가 있음. (...) 200달러의 기부금이 수령국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입양 수수료로 1,650달러를 받고자 함.

한국사회봉사회 → 덴마크 Adoption Center 서신, 1988. 7. 27.

Item I. List of KSS Fee on July 18, 1988:
We need new list of the KSS fees for the month of July 1988 — just the same as before of US\$1,500. for each child. We are not supposed to receive \$1,900. as a fee for each case. We can accept \$400. as a donation for each without child's name. I am returning the list of the KSS processing fees on July 18, 1988 for new one.

기존 1,500달러와 동일하게 1988년 7월분 수수료의 새 명단을 요청함. 우리는 각 아동별로 수수료 1,900달러를 받을 수 없음. 단, 아동 지정이 없는 기부금으로 400달러를 따로 받을 수 있음. (...)

▶ 기부금은 ‘아동 송출의 대가’이자 ‘입양아동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금

- ☞ 의무적으로 징수된 기부금은 입양 수속 실비로 쓰이는 것을 넘어, 입양알선기관들이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는 시설(아동시설, 미혼모시설, 조산소, 산부인과 등)에 투자되어 입양아동 공급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 ‘88서울올림픽 전후로 고아 수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정부가 해외입양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덴마크 Adoption Center는 한국사회봉사회에 그간 자신들이 제공한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를 보면 기부금의 성격이 인도주의와 무관한 아동 거래였음을 알 수 있음

Adoption Center 대표 FLN과 한국사회봉사회 회장 김○○ 전화통화 녹음 기록 1989. 5. 9. ~ 7. 27.	
FLN siger, at han så muligvis vil rejse tilbage lidt tidligere, men han vil gerne tale med Mr. Kim før han taler med Mrs. Paik. FLN spørger om unge Mr. Paik også er i Korea? Mr. Kim svarer vistnok bekræftende. Det er godt, siger FLN, for som Kim ved, finder han det nødvendigt at tale med både Mr. Kim og Mrs. Paik angående KSS' fremtidige policy. Vi ved ikke ret meget om deres hensigter: vil de fortsætte som adoptionsformidlende organisation eller vil de koncentrere sig om Greenhill? Dette	
FLN은 "(...) Adoption Center는 한국사회봉사회가 입양 촉진 단체로 계속 활동할지, 아니면 청려수련원 사업에만 집중할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는 향후 기부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FLN siger, at det vil være nødvendigt, at han kan møde både Mrs. Paik og unge Mr. Paik (Mr. Shook?), når han kommer til Korea. Mr. Kim spørger, hvad han vil foreslå dem? FLN siger, at vi har behov for at vide, hvad KSS' hensigter og fremtidsplane er nu, da antallet af børn falder drastisk. Mr. Kim bliver meget ophidset og råber, hvorfor FLN absolut skal tale med Mrs. Paik og unge Mr. Paik om det? På grund af lånet, siger FLN. Vi skal vide, hvad der vil ske med lånet, vi har givet KSS og fremtidige donationer. OK, OK, siger Kim fornærmet. FLN siger, at han mener, vi skal tale med Mrs. Paik herom. OK, siger Kim.	
FLN은 "입양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봉사회의 의도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특히 우리가 한국사회봉사회에 준 대출금과 기부금을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겠다."라고 말했다.	

※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금’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아동보호시설이 입양알선기관의 금전적 지원에 의존할 경우, 시설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입양 가능 아동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고, 이는 곧 불법 입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한 바 있음¹⁾

1) UN Human Right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16. 12. 22., A/HRC/34/55

상품이 된 입양 아동 ... “장애아동은 수수료 할인해 드립니다”

1975. 11. 26. 덴마크 일간지 EKSTRA BLADET 기사

side 4 onsdag den 26. november 1975

EKSTRA BLADET

INVALIDE BØRN 'SÆLGES' FOR 3.600 - SUNDE KOSTER 10.000

Nu kan danskere igen 'købe' børn fra Sydkorea - der leveres også børn fra Mellemamerika, Indien og Bangla Desh

gustenberg, siger: - Det kan måske lyde lidt underligt, at det er billigere at få et han-

dicappet barn, men årsagen er, at en familie, som ta'r et dant barn til sig, næsten altid må regne med store udgifter, selv om hospitalis-indlæggelser og den slags er gratis i Danmark.

Omkring 50 danske familier er skrevet op til et adoptivbarn fra Sydkorea hos Terre des Hommes: - Alle sydkoreanske børn under 5 år, som vi skaffer danske hjem, er handicappede. Derimod er der både raske og handicappede børn over 5 år fra Sydkorea, siger Tytte Botfeldt.

Organisationen startede i august med adoption af børn fra Bangla Desh: - Forelsbig har 19 børn fra det krigshærgede Bangla Desh fået danske forældre. Vi har endnu 60 børn parate derude og regner med, at omkring 120 børn fra Bangla Desh i det kommende år får danske adoptivforældre.

Alle Bangla Desh-børnene er raske. De handicappede børn har ikke haft overlevelsesmuligheder og derfor er der så få af dem. Fly-billetten til Danmark fra Bangla Desh koster omkring 3.500 kr. Når adoptivforældrene skal betale 9.500 kr. hos Terre des Hommes for et barn, er det fordi forældrene skal være med til at betale organisationens udgifter, bl.a. til et baby-hjem i Bangla Desh, hvor de små adoptivbørn gennemgår en helheds-kur inden afreisen.

KUN 20 BØRN OM MÅNEDEN

Efter et års stop for adop-

tioner har de sydkoreanske myndigheder nu igen givet de tre danske adoptions-organisationer, Terre des Hommes, Glente Børn og Adoption Center i Århus tilladelse til at adoptere børn fra Sydkorea. Der vil dog ikke fremover blive ubegrænset trafik af børn, for de sydkoreanske myndigheder har bestemt, at Danmark kun kan bevilges 20 børn om måneden, ifølge presseattachéen ved den sydkoreanske ambassade, Hanauk Yang. I øvrigt har Sydkorea krævet, at adoptivforældrene højest må have fire børn i forvejen og at børn over 10 år ikke kan bortadopter. Når Sydkorea i december sidste år lukkede af for adoptionsbørn til Danmark, var det fordi man erfarede, at flere at adoptivforældrene højest blevet skilt og de koreanske børn var havnet på børnehjem.

Foreningen Glente Børn, hvis formand er Steen Grand, har omkring 800 familier på venteliste til adoption af et Koreabarn. Et tilsvarende antal forældre ventler hos Adoption Center. Disse to foreninger formidler kun adoption af raske børn, og prisen er ca. 10.000 kr.:

- Vi håber at kunne hente de første børn i Sydkorea om en måned eller to efter vi nu igen har fået positiv forbindelse med de sydkoreanske myndigheder, siger Steen Grand.

- Hvordan fordeler de tre foreninger 20 børn om måneden?

- Det er ikke afklaret endnu. Vi regner med, at

AF JONNA GADE

Kølev-Sygen
41500-50?

myndighederne mener, at hver adoptions-organisation kan få udleveret højst 20 børn om måneden, men det skal vi have afklaret i nærmeste fremtid.

De tre organisationer er tilsyneladende ikke på talefod, for man har ikke indbyrdes drøftet en fordeling af adoptivbørnene, som følge den sydkoreanske presseattaché er 20 børn om måneden til alle tre organisationer.

BORTADOPTION
ØNSKET

Glente Børn formidler også adoption af børn fra Mellemamerika og Indien. - Men det er under 20 børn om året fra de to områder til sammen, siger Steen Grand.

- Det er blevet overordentlig vanskeligt at adoptere børn fra de såkaldte U-lande. Disse lande arbejder på at højne levestandarden og foretrækker økonomisk hjælp til børnehjem og lignende fremfor bortadoption til fremmede lande. Det er forståeligt, og derfor yder Glente Børn f.eks. også økonomisk støtte til børnehjem i Sydkorea.

Sidste år blev omkring 400 danske par forældre til koreanske adoptivbørn.

《 장애아동 3,600에 판매 - 건강한 아동 10,000 》

이제 덴마크인들은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어린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인도, 방글라데시에서도 어린이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가격은 약 10,000DKK인 반면, 장애아동은 비행기 표 가격, 즉 3,600DKK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앙아메리카, 인도에서 입양된 아이들도 같은 비용이 듭니다. (…)

약 50명의 덴마크 가족이 Terre des Hommes에 한국에서 온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TDH의 Tytte Botfeldt는 덴마크 가정에 제공하는 5세 미만의 한국 어린이는 모두 장애가 있고, 5세 이상은 건강한 아이와 장애 어린이가 모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양부모의 아동 '반품' 요구, 버려지는 입양아

덴마크 Adoption Center가 한국사회봉사회에 보낸 서신 (1983. 11. 22.)

Item V: [REDACTED]

The above-mentioned child arrived to Denmark on [REDACTED], and was placed with [REDACTED].

In the end of September, 1983, the girl was hospitalised for a specialist's examination as she was not developing normally. It turned out that she is deeply mentally retarded, and it has been decided by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to let her stay in an institution which is able to care for her adequately, as they feel unable to do so.

Enclosed we send you the discharge letter from the hospital with the complete diagnosis of the child, and a translation of it we have done.

The family [REDACTED] decided that they would like to receive another child some time early next year. Do you still have their homestudy, or shall we send you a new homestudy with photos of the family?

(...) 1983년 9월말, 입양아동이 정상발달이 되지 않아 특수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부모는 적절한 돌봄을 위해서는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 가정은 내년 초 즈음에 다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한다. (추가 입양 배치를 위해) 해당 가정의 가정조사서를 다시 보내줄지, 아니면 기존에 보냈던 것을 활용하면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달라.

▶ 아동의 외국 시민권 취득 전에, 입양알선기관 임의로 후견권 포기

후견권 이양각서

본인은 [REDACTED]의 후견인으로써 이 아동이 적합한 정 말 국 인 가정에 입양이민하는 것을 동의함과 동시에 정 말 국 내에서의 입양이민 수속상 필요한 일체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모든 권리와 아동의 의료 조치에 관한 동의권 그리고 입양승락의 동의 및 공인양년기관에의 그 이양에 관한 권리와 아동보호에 관한 포기권등을

어 답 손 센 타 에 위임함

위와 같이 아동에 관한 권리를 이양함은 아동에 대한 본인의 보호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법적 입양 완료 후에는 양친이 친권을 취득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본인의 후견인으로써의 모든 권리를 이에 포기함

한국사회봉사회장 김 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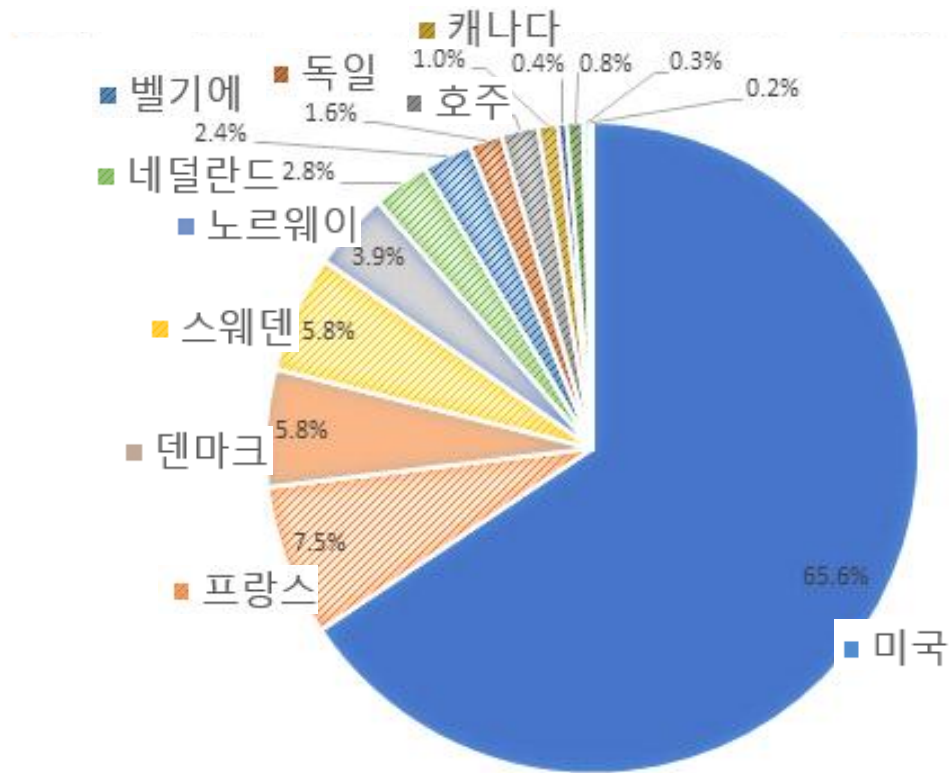
증 인 정 창 순

☞ 입양특례법(시행 1977. 1. 31.) 제12조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 위 조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아동의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입양알선기관이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해야 하며, 임의로 ‘후견권 이양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50252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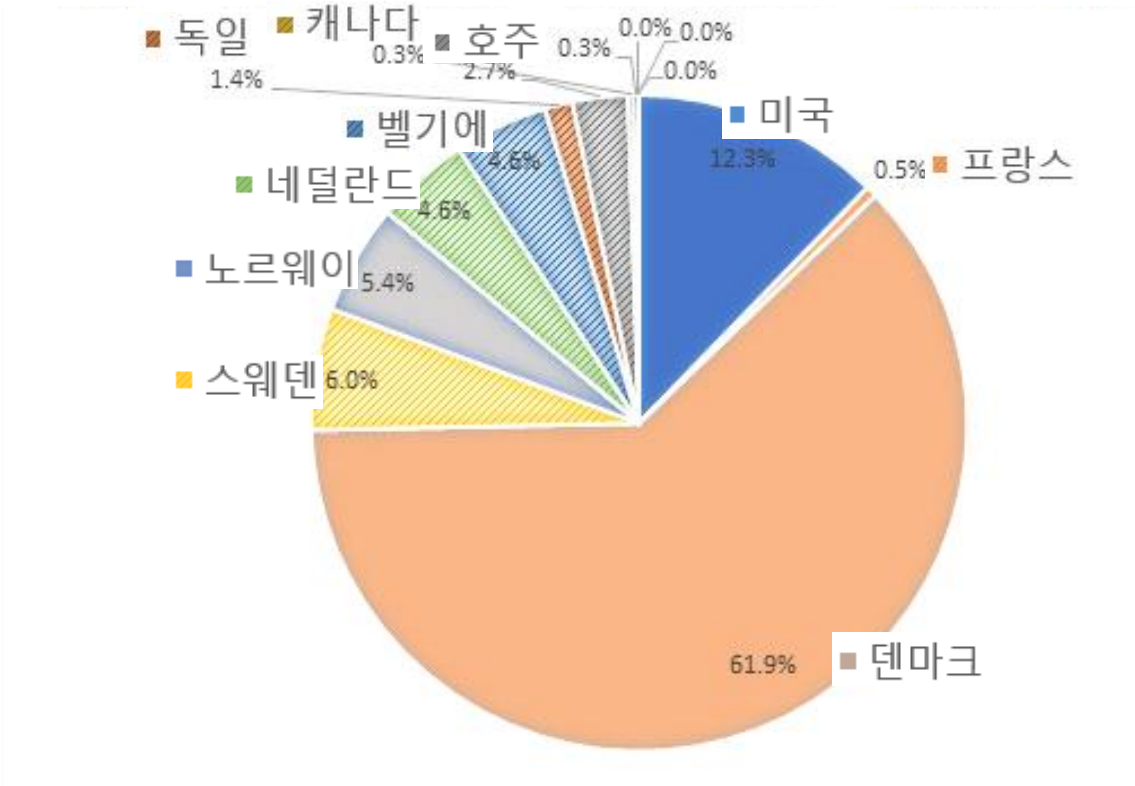
□ 국가별 해외입양 건수 및 비율



1955년부터 1999년까지 총 141,776건

국가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건수	93,009	10,620	8,265	8,244	5,499	3,993	3,456
비율	65.6%	7.5%	5.8%	5.8%	3.9%	2.8%	2.4%
국가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기타
건수	2,308	2,583	1,381	630	1,139	412	237
비율	1.6%	1.8%	1.0%	0.4%	0.8%	0.3%	0.2%

□ 국가별 신청인 건수 및 비율



총신청 367건

국가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건수	45	2	227	22	20	17	17
비율	12.3%	0.5%	61.9%	6.0%	5.4%	4.6%	4.6%
국가	독일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기타
건수	5	10	1	1	0	0	0
비율	1.4%	2.7%	0.3%	0.3%	0.0%	0.0%	0.0%